

경기과고, 2020 입시부터 영재성 검사·서류 평가 분리

영재학교인 경기과고가 2020학년 신입생 선발 시 서류평가를 기존의 1단계에서 분리해 실시한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과고는 이 같은 내용의 2020 경기과고 신입생 선발 방법의 변화를 알렸다. 4월 원서 접수를 시작하는 영재학교는 신입생 선발 시 1단계 서류평가-2단계 영재성 검사-3단계 캠프 면접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경기과고는 2019학년까지 1단계에서 서류평가와 영재성 검사를 함께 진행했다. 다른 학교와 달리 지원하면 영재성 검사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학생들에게 평가받을 기회를 더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중학교 생활에 바탕한 서류가 다소 미흡해도 영재성 검사로 만회할 수 있어 사교육을 유도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전형 방법의 변화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려는 학교 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과고 측은 “입학 전형에서 중학교 교육 활동 결과를 평가에 최대한 반영해 공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평가 단계에 변화를 줬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20학년부터 1단계에서는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서류평가를 실시하고, 2단계에서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전형에서는 영재성 검사, 추천 관찰 전형에서는 관찰을 진행한다. 3단계에서는 2단계 통과자를 대상으로 영재성 캠프를 진행, 이를 통해 최종 합격 예정자를 선발한다.

서류평가에서는 입학 원서,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Ⅱ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강화된 서류평가를 위해 일반 전형의 추천인은 2명으로 할 예정이다. 추천 관찰 전형의 추천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3명으로 하되 모두가 동시에 추천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새 입학 전형 요항은 3월 중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될 예정이다.

겨울방학 '1월 시작' 학교 많아

통상 12월 말이었던 겨울방학 시작일을 1월 초로 늦춘 학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중·고교 상당수가 기존 교육과정과 비교해 5일 안팎씩 방학 시작이 늦춰졌다. 매년 2월 개학했다가 며칠 등교 후 다시 봄방학에 들어가는 대신 방학을 늦게 시작해 3월 초까지 이어서 쉴 수 있도록 한 학교가 늘었기 때문. 종업식에 맞춰 2월 초 열렸던 졸업식도 1월 초에 여는 학교가 늘면서 '졸업 시즌'에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 측은 "학생들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교사들도 새 학년도 교육과정을 준비하기 수월해 '1월 초 방학'을 증가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국제통상 마이스터고 2020년 개교

경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제통상 분야의 마이스터 인재를 양성하는 국제통상 마이스터고(가칭)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로부터 현 경주 감포고의 마이스터고 전환 승인을 받아 2020년 3월 국제통상 마이스터고의 문을 열 예정이다. 국제무역과 3학급 60명으로 학급을 편성하고, 어학 능력이 우수한 다문화 학생과 공업적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중심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322억 원을 들여 학교 시설을 정비·조성하고 교육과정을 개발할 방침이다.

사서와 독서 여행 떠나볼까

서울시교육청 소속 22개 도서관과 평생학습관은 1~2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서와 함께하는 독서 여행' 행사를 진행한다. 남산도서관이 개발한 독서치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저자 강연, 인문학 강좌, 학교 밖 청소년 특강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실시한다.

서대문도서관은 중학생 대상 '청소년독서도로교실(1월 10~24일)'을, 송파도서관은 청소년 대상 '10대에게 권하는 공학 저자 강연(1월 19일)'을 열 계획이다. 고덕평생학습관은 성인을 대상으로 '사기, 21세기 지성으로 스캔한다(2월 13~27일)'를 운영한다.

학폭 가해 학생 보호자, 예방 교육 안 들으면 과태료 300만 원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학생과 함께 예방 교육을 받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피해 학생이 결석하더라도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고, 성폭력을 당한 학생의 전학 절차도 정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학폭 예방 교육 강화 등을 위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게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할 경우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는 명시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컸다. 이 때문에 새 시행령은 보호자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교육감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도록 명시했다.

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다니는 학교 교장이 교육감에게 새 학교 배정을 요청하고 교육감이 학교를 지정하면, 지정받은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입학을 허락하도록 지침이 바뀐다. 이울러 학폭 피해 학생이 '보호 조치' 대상으로 결정되기 전 학교에 결석하더라도 일정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②

취재·정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